

권리라고 말한다 가톨릭 교회는 보건의료를



Fr. Thomas Nairn, OFM, Ph.D.
senior director, ethics, Catholic Health Association, St. Louis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왜 가톨릭 보건의료가 의료개혁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상기해 볼 좋은 시간이다. 15년도 더 전에, 미국 의회가 클린턴 의료개혁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그 현안에 대한 사목적 성찰을 제공하였다.¹⁾ 주교단은 이 문헌의 서문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우리는 포괄적인 의료개혁에 매우 헌신적인 지역사회와 사목자와 교사이자 지도자들이다. 개혁의 시급성은 우리의 전통적인 원칙과 일상의 체험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보건의료에 몸담고 있는 이들 역시 보건의료가 곧 인권임을 아는 까닭에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다.

가톨릭 사회 가르침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교회가 보건의료를 권리로 생각한다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교황 요한 23세는 “인간은 병고, 노동력의 결여(….) 등에 처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존 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²⁾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미국 가톨릭 주교단은 1981년의 사목교서 「건강과 보건의료(Health and Health Care)」에서 이 점을 보다 더 명백하게 “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나 인간의 생명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만큼 그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인정하였다. 보건의료를 권리라 여기는 이러한 이해는 가톨릭 전통의 일부였으며, 그 의미는 오직 가톨릭 사회 전통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된다. 권리에 대해 언급할 때 가톨릭 사회 전통은 미국의 법 전통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권리 : 미국과 가톨릭의 이해 |

미국인들이 권리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자유에 대한 목록이나 어느 한 개인이 타인 또는 사회에 맞서 제기하는 일련의 자기주장과 요구들이다. 미국의 법 전통은 특히 19세기 후

1)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Health Care Reform: Protecting Human Life, Promoting Human Dignity, Pursuing the Common Good”(June 1993). 주교단이 천명한 가치는 생명 존중,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보편적인 혜택, 포괄적인 혜택, 다양화, 질적 수준, 비용 억제와 규제 그리고 공평한 자금 지원이었다. 2009년 5월 20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 보낸 성명서에서도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국내 정의 및 인간 발전 위원회 의장인 윌리엄 머피(William Murphy) 주교는 이와 똑같은 8가지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2) 요한 23세, 교황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1항.

기톨릭 사회 가르침에 따르면,

권리는 자율적인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에 맞서 제기하는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다.

권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을 지니며,

각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가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반 아래 권리의 개념과 개인의 자율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해 왔다. 1891년 〈Union Pacific Railway Co. v. Botsford〉 사건의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히 논의의 여지가 없는 판례에 의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자율과 소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보다… 더 신성시되는 권리는 없다”고 판시하였다.³⁾ 그보다 몇 년 앞서 미국의 한 주요 법조문은 자율을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ft alone)”라고 정의하였다.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권리라는 나의 자율적인 행위를 타인이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주장이나 요구이다. 여기에는 타인의 권리를 나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해가 보건의료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잃어버린 것만큼 누군가는 얻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개월 간의 논쟁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확실히 전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건의료의 권리에 대한 가톨릭의 신념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이 존엄성은 단순하게 개인주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가톨릭 전통의 기반인 자연법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적이다. 만일 그렇다면 개인주의자들은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한다. 가톨릭 사회 가르침에 따르면, 권리라는 자율적인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에 맞서 제기하는 요구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다. 권리라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을 지니며, 각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가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돋는다. 가톨릭 전통 안에서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common good)은 언제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 편으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본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공동선 자체는 –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공동선을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⁵⁾라고 정의한 데에서 보듯이 – 개인들을 도와시하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Justice Horace Gray, *Union Pacific R. Co. v. Botsford* 141 U.S. 250(1891)

4) Thomas M. Cooley, *The Elements of Torts*(1888), 29.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26항.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65항도 참조하라.

이러한 전망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다. 가톨릭 전통은 보건의료를 권리라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는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를 자율적인 개인들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시민들 누구나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비록 얼마간의 희생은 따른다 할지라도 – 사회에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 공동선 |

1993년 가톨릭 주교단은 “포괄적인 의료개혁의 틀(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Health Reform)” 안에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인간은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주교단은 “이 권리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한다”고 부언하였다. 공동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주교단은 또한 너무나 많은 개인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진정한 개혁이 특수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현상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강력한 세력의 저항에 의해 좌초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의료개혁 법안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작은 이익 때문에 개혁을 저지하려는 이익단체들의 문제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주교단은 이 문헌을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6)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 “A Framework for Comprehensive Health Care Reform” (1993)

보건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공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각자는 모두 우리가 이 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 자신의 건강과 모든 이의 존엄을 존중하는 일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과연 변화를 이루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태만을 다스리고 희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미국인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맹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그리고 지극히 중대한 이 의료 논쟁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이렇듯 주교단은 권리에 대한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제껏 제대로 다루어진 바 없었던 가톨릭교회의 공동선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분명하게 표현한 바와 같이, 만일 연대성이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라면,⁷⁾ 그것은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이들, 다시 말해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인 다른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종종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현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건의료를 인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시작된 후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를 표명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38항.

출처: Fr. Thomas Nairn, “Catholics Understand Health Care As a Right”, *Health Progress* (March–April, 2010), pp.58–60.

번역: CMC 임상사목연구소